

제31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3. 7. 20.)에서 의결된
'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'을 아래와 같이
공포한다.

2023년 7월 21일

고흥군의회 의장  재홍

고흥군의회 규칙 제 2023-53호

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지 제5호 서식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.

시 험 요 구 서

접수번호	기 관	개 인						
①	소속		② 시험 구분		③ 임용예정 직 급	직명		
	요구					직류		계급
④	한글		⑤ 연령	만 세	⑥ 현 직 급	직명		
	한자					직류		계급
⑦ 선택 과 목	가.		⑧ 필기시험 면제사유		⑨ 제 1 차 시험 면제사유	년 월 일 시행 제 회 1 차 합격 응시번호		
	나.							
⑩ 자격·면허 훈련 등			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(해당란에○)	군제대자 (복무기간) 유공자 및 그 가족	※ 대장 원본 확인	대장번호		
							확 인 자 성 명	
위와 같이 요구함.						계 인	(사진) (3.5cm×4.5cm)	
년 월 일 (인)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								
※ 시 험 시행사항	시행차수	1	2	3				
	시행연월일				
	회 수	제 회	제 회	제 회				
	응시번호							
	결과							
응시 번호		응 시 표				계 인	(사진)	
년 시행 제 회 시험							위 요구서에 붙인 것과 같은 원판, 같 은 규격	
임용예정직명 :		(급 류)						
성 명 :								
시험요구기관명 :								
		년 월 일						
		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 (인)						

작 성 요 령

1. ※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.
2. ①~⑩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.
 - ①란의 “소속”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.
 - ②란은 “전직”, “경력경쟁임용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 - ③, ⑥란의 “직류”란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규정된 직렬표에 따라 해당직류에 한정하여 명확히 기재한다.
 - ④란은 정자(正子)로 기재한다.
 -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또는 별표 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(서기관이상 전직,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(가)란에 1차 (나)란에 2차시험과목)을 기재하되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라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.
 - ⑧란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(서류전형 및 면접시험)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(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붙여야 한다)
 - ⑨란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0조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정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,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.
 - ⑩란과 ⑪란은 6급 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정하여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3 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붙여야 한다.
3.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붙이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

(수입증지침부란)

(절 취 선)

응시자주의사항

1.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개시 1시간 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.
2.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용구(만년필 또는 볼펜)를 지참하여야 한다.
3.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시 험 요 구 서

접수번호	기 관	개 인						
①	소속		② 시험 구분		③ 임용예정 직 급	직명		
	요구					직류	급	
④	한글		⑤ 연령	세	⑥ 현 직 급	직명		
	한자					직류	급	
⑦ 선택 과목	가.		⑧ 필기시험 면제사유		⑨ 제 1 차시험 면제사유	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		
	나.							
⑩ 자격·면허 훈련 등			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(해당란에○)	군제대자 (복무기간) 유공자 및 그 가족	※ 대장 원본 확인	대장번호		
						확 인 자 성 명		
위와 같이 요구함.						계 인	(사진) (3.5cm×4.5cm)	
년 월 일 (인)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								
※ 시 험 시행사항	시 행 차 수	1	2	3				
	시행연월일				
	회 수	제 회	제 회	제 회				
	응 시 번 호							
	결 과							
응시 번호		응 시 표				계 인	(사진)	
년 시행 제 회 시험								
임용예정직명 :		(급 류)			위 요구서에 붙인 것과 같은 원판, 같 은 규격			
성 명 :								
시험요구기관명 :								
		년 월 일						
		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 (인)						

작 성 요 령

1. ※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.
2. ①~⑩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.
 - ①란의 “소속”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.
 - ②란은 “전직”, “경력경쟁임용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 - ③, ⑥란의 “직류”란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규정된 직렬표에 따라 해당직류에 한정하여 명확히 기재한다.
 - ④란은 정자(正子)로 기재한다.
 -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또는 별표 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(서기관이상 전직,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(가)란에 1차 (나)란에 2차시험과목)을 기재하되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라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.
 - ⑧란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(서류전형 및 면접시험)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(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붙여야 한다)
 - ⑨란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0조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정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,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.
 - ⑩란과 ⑪란은 6급 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정하여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3 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붙여야 한다.
3.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붙이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

(수입증지첨부란)

(절 취 신)

응시자주의사항

1.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개시 1시간 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.
2.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용구(만년필 또는 볼펜)를 지참하여야 한다.
3.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